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99
----------	-----

제출년월일 : 2000. 6.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한 국제 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 개발과 우수 유전자를 지닌 도내 자생식물의 고유품종 보존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충청북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등의 보존과 연구로 국제종자 경쟁력 확보와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 연구센터의 구성 및 위촉, 임기, 위촉해제(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센터장 1인과 6명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3년의 임기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센터장, 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요청하거나 업무관련 비리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
- 연구과제의 선정, 승인, 결과보고(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연구센터에서는 도지사, 연구소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과제를 선정 연구(안 제7조)
 -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필요시 연구소장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내지 9조)
 - 연구가 끝나면 연구결과를 연구소장의 심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0조)

- 예산지원을 통한 연구활동비 및 여비지급(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내지 12조)
- 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구센터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 연구소 내에 둔다.

제3조(연구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행한다.

1.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우량 품종 선발과 증식 보급
2. 신품종 개발 및 재배신기술 등에 대한 충청북도 산업재산권 등의 등록 및 보존·관리
3. 희귀수목등에 대한 표본제작, 사진·비디오 촬영 등 교육자료 제작
4.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연구개발

제4조(구성및위촉) ①연구센터에는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1명과 연구원 6명이내로 구성 한다

②센터장은 연구소장 또는 수목 및 산야초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연구원은 임업 또는 원예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학계, 민간인등을 대상으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센터장 및 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 또는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센터장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센터장 또는 연구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요청한 때
2.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있을 때
3. 공무원 신분해당하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연구센터는 도지사 또는 연구소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계획서의 승인) ①센터장은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선정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시에는 연구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소장은 이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9조(연구결과의 보고) 센터장은 선정된 과제의 연구종료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 연구소장의 심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센터장 또는 연구원의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지급) ①센터장 또는 연구원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거 센터장은 제3호, 연구원은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당해 연구센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산림법

제114조의 2(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 산림의 경영관리 및 이용과 임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3(기술연구개발의 범위) 법 제11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2. 임산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3. 산림생물에 관한 연구개발
4.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산림생산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개발
7. 임업경제 및 정책·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구분	해당 공무원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별표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생략 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봉 이상의 전임강사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 16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특호	1등급	1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실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22,000	18,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22,000	15,000

- 비고: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